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40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별첨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2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 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 해 제정된 법률

제43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률

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이 외의 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보험가입금액의 10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함)	
여성유방암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보험가입금액의 3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를 지급함)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보험가입금액의 3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를 지급함)	
소액암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 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 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 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1회의 진단확 정에 한함)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 1년미마 : 최초계얀이 계얀익브터 1년이 되는 시전이 계얀해단익이 저날까지			

※ 1년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

- 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제21조(계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5항 제3호에 따라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3.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이 계약의 "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하며,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이라 함은 "암" 중에서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5. 이 계약의 "중증 갑상선암"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수질성암 (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중증 이외 갑상선암"이라 함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부표2 |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암진단급여금 여성유방암진단급여금 전립선암진단급여금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소액암진단급여금 (제3조)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약 환급금 (제33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VIDOT: VIII 8)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8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 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부표3



별첨2 [표 5-1] 참조

부표4

유방암 분류표



별첨2 [표 8-1] 참조

부표5

전립선암 분류표



별첨2 [표 8-2] 참조

부표6

갑상선암 분류표



별첨2 [표 8-4] 참조

82

부표7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별첨2 [표 6-1] 참조

부표8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첨2 [표 7] 참조

신한두개로OK암보험 일반암진단생활비특약(무배당, 갱신형)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조의3 "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조의4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조의5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 등의 발생통지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성립

제14조 특약의 무효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17조 특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2조 해약환급금

제7관 기타사항

제23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부표2]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부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부표4] 유방암 분류표

[부표5] 전립선암 분류표

[부표6] 갑상선암 분류표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 이 특약명 "신한두개로OK암보험 일반암진단생활비특약(무배당, 갱신형)"에서 일반암이라 함은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 및 "중증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신한두개로OK암보험 일반암진단생활비특약(무배당, 갱신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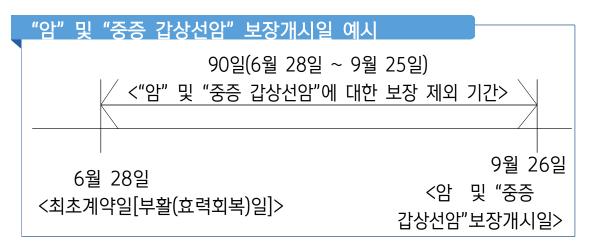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최초계약 : 제13조(특약의 성립)에 따라 특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을 말합니다.
 - 마. 갱신계약 : 제1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에 따라 특약이 갱

신되는 경우 갱신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바. 갱신일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보험금 지급사유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말합니다.
- 3. 이자율과 지급금 관련 용어
 - 가. 평균공시이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또한, 관련법규 등 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 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 평균공시이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제1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참조]을 말합니다.
 - 나.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조의3("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2조의2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1.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2. <부표6> "갑상선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 3. 제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 암
 - 4. 제2조의5("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방광 암
 - 5.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유방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부 표4> "유방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하며, 여성 피보험자에 한 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부표 5> "전립선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의한 "암"에서 제2항에서 정의한 "여성유방암" 및 제3항